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구 미 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20. 8. 27. 경북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고시(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40호)
- 나. 첨단 ICT 기반 스마트제조시스템을 통한 사업화 촉진으로 지역의 제조혁신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기업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한 중소기업 기술자립화 형성
- 다.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5 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대상기관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1) 설립일 : 2005. 9. 1.
- (2) 조직 및 인원 : 1부 11본부 11실 16팀, 162명
- (3)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 (4) 기관 주요사업
 - 1) 연구개발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업
 - 2) 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 3)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
 -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나. 사업개요

(1) 사업명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

(2) 사업기간 : 2021년~2025년(5년간)

(3) 출연금 : 금6.3억원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229.48	72	57	39	29.33	32.15
국비	159.15	60	40	20	16	23.15
도비	18.1	3.6	5.1	2.7	4	2.7
시비	52.23	8.4	11.9	16.3	9.33	6.3

* 국·도비는 각 기관에서 출연

(4)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북도, 구미시

(5) 수행기관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금오공과대학교

(6) 사업내용

- 1) 기술발굴 및 연계 : 특화분야 중심 양방향 기술발굴 및 연계
- 2) 기술이전 사업화 : 스마트제조시스템 기업의 사업화 성공 지원
- 3) 강소형 기술창업 : 혁신기술창업 등 기술특화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4)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 : 네트워크 운영, 기업 육성 등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다.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58조 및 제58조의2
-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5조, 제9조, 제10조
-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3.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9. 9. 27. : 구미강소특구 지정 신청(경북도 → 과기부)
- 2020. 7. 27. :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의결(연구개발특구위원회)
- 2020. 8. 27. :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
- 2021. 3. 10.~2022. 3. 9. : 1차년도 사업 시행
- 2022. 3. 10.~2023. 3. 9. : 2차년도 사업 시행
- 2022. 6. 22. :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23. 2. 16.~17. : 구미 강소특구 테크페어
- 2023. 3. 10.~2024. 3. 9. : 3차년도 사업 시행
- 2024. 3. 10.~2025. 3. 9. : 4차년도 사업 시행

4. 기대효과

-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성과 및 유망기술의 활성화와 연구소기업 설립 등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특구 활성화 촉진을 도모하고,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 하는 과학기술 기반 제조혁신 클러스터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달성 가능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특구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

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5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과학기술인 단체 등(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
2.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
 - 가. 첨단·지식기반·뷰티·탄소 및 물산업
 - 나. 부품·소재산업

다. 신성장동력산업

3. 중소기업 신기술·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이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관련사업(이하 “관련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 육성사업

2. 문화 확산사업

3. 혁신역량 등 강화·활성화사업

제9조(관련사업 추진) 시장은 관련사업의 효율적 병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보조) 시장은 진흥사업 또는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이나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구미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강소특구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강소특구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강소특구 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첨단기술기업 창업 및 유치에 관한 사항
3.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에 관한 사항
4. 강소특구의 대학·연구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강소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강소특구에 대한 투자의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강소특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강소특구 지원 사업) 시장은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과학기술 진흥 사업
2.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정보통신기술 융합 및 활용 지원 사업
4. 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5. 첨단기술기업 창업·유치 및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사업
6. 공공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
7. 공공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8.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
9. 강소특구의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을 위한 출연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강소특구 육성사업은 기재부의 국비 삭감 결정에 따라 당초보다 예산이 급감되어 사업운영에 애로 발생
- 연구소기업을 비롯한 특화분야 기업의 공공기술 상용화 및 고도화, 양·질적 성장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성장지원 자금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4차년도(2024년도) 사업 세부 비용에 준하여 산정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억원)

연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구분						
세출	8.4	11.9	16.3	9.33	6.3	52.23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억원)

연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구분						
국비	60	40	20	16	23.15	159.15
도비	3.6	5.1	2.7	4	2.7	18.1
시비	8.4	11.9	16.3	9.33	6.3	52.23
합계	72	57	39	29.33	32.15	229.48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신산업정책과 스마트제조팀 김형중(☎480-618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총계	630,000	
지역핵심기술 특화성장지원	318,500	○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5개社) : 70,000 ○ 강소특구 기술제품혁신 지원 (10개社) : 185,500 ○ 스마트제조시스템 구축 지원 (1개社) : 42,000 ○ Biz-solution 지원 (30개社) : 21,000
기업 혁신 플랫폼구축	224,000	○ 구미 소재 기업 현황 및 수요조사 : 7,000 ○ 지역특성화 사업 운영비 : 217,000
강소특구 해외진출 지원	45,500	○ 강소특구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 (20개社) : 45,500
간접비	42,000	○ 특구재단 기획평가관리비용 : 42,000

별첨 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현황

소재지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설립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설립) 	대표전화	일반 : 042)865-8800				설립주체 (주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FAX : 042)865-8999															
			URL : www.innopolis.or.kr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73.12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 연구단지 준공 '92.11월) '05.07 대덕연구단지에서 연구개발특구로 확대 개편 (특구법 시행) '05.09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 '11.01 광주대구특구 추가 지정 '12.07 특구법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범 (기관명칭 변경) '12.11 부산특구 추가 지정 '15.08 전북특구 추가 지정 '18.0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준정부기관 지정 '19.08 강소특구(안산, 진주, 창원, 포항, 청주, 김해) 지정 '20.07 강소특구(구미, 홍릉, 울주, 군산, 나주, 천안·아산) 지정 '22.05 강소특구(인천 서구, 강원 춘천) 지정 '23.0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타공공기관 지정(기관유형 변경) 												기관형태	기타공공기관				
인원현황	구분	계	임원	직원														
				일반정규직						상용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일반	연구	전문계약	별정	기능	기타	소계	청경	무기계약	기타	소계	기간제	단시간	기타
				정원	170	1	157	157			-	12	-	12	-	1	1	-
현원	161.25	1	150.25	150.25			-	10	-	10	-							
임원	직책	성명	주요경력										연락처					
	이사장	정희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042-865-8801					
	비상임이사	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관										044-202-4720					
	비상임이사	강윤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044-215-7300					
	비상임이사	부하령	건국대학교 교수										02-450-3999					
	비상임이사	손재영	경북대학교 RIS 센터장										053-243-4010					
	비상임이사	김정선	동서대학교 총괄부총장										051-320-1798					
	비상임이사	장희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02-2183-1622					
	비상임이사	김진상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02-958-5693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구 연구성과 사업화(기술발굴 및 연계, 기술이전사업화 등) 연구소기업·창업 성장 지원(창업 지원, 첨단기술기업 육성, 글로벌 지원 등) 글로벌 환경 구축(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정주여건 개선 등) 특구 인프라 구축 및 타 지역과의 연계(특구개발관리 등)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실증특례, 신속확인, 임시허가 등) 																	
자본금(원) (2023년말 기준)	설립	41,263,000,000																
채무상태(백만원) (2023년말 기준)	자산			부채			자본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금	잉여금 등									
	78,444	28,512	49,932	13,324	3,929	9,395	65,119	41,263	23,856									

소 관 부 서		신산업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조 영 열
	팀 장	김 동 기
	담 당 자	김 형 종 (480-6183)